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국가병상동원 전략 수립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의약품·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11일에서 2023년 9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질병관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2년 9월 11일”을 “2023년 9월 11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질병관리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8조 관련)

1. 제3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1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1

2. 제38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1
6급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한시정원) ① <u>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해당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제38조(한시정원) <삭 제>
② <u>국가병상동원 전략 수립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해당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삭 제>
③ <u>의약품, 물자 등의 수급을 위</u>	③ -----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9월 11일</u>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해당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생략)	----- ----- --- <u>2023년 9월 11일</u>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1